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교육전담간호사 운영비용의 국가지원 의무화〉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547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2 |
| 1. 개정안의 내용 .....          | 2 |
| 2. 검토의견 .....             | 2 |
|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 9 |



# I. 개요

##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5. 2. 27.
- (3) 회 부 일 : 2025. 2. 28.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숙련된 간호인력인 교육전담간호사는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위한 신규간호사 양성에 필수적인 인력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도 필수적임.

이에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양질의 간호사를 양성함으로써 환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 II. 주요 내용별 검토

###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재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대한 국가의 비용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항).

| 현행                                                                                                                                                  | 개정안                                                                                                                                                                 |
|-----------------------------------------------------------------------------------------------------------------------------------------------------|---------------------------------------------------------------------------------------------------------------------------------------------------------------------|
| <p>법률 제20445호 간호법</p> <p>제32조(교육전담간호사) ①·② (생략)</p> <p>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u>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lt;후단 신설&gt;</p> <p>④ (생략)</p> | <p>법률 제20445호 간호법</p> <p>제32조(교육전담간호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br/>-----<u>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 대상·범위·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
| 시행일: 2025년 6월 21일                                                                                                                                   |                                                                                                                                                                     |

### 2. 검토의견

- 정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신규간호사 현장적응 및 임상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음.

- 지원대상은 국·공립병원<sup>1)</sup>에 한정하고, 매년 약 50개 의료기관에 250여명의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였음.

#### <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현황 >

- ('19년) 7,660백만원\*, 국공립 52개소, 교육전담간호사 254명 지원('19.12.말 기준)  
\* 실집행액 3,663백만원(집행률 47.8%), 집행잔액 3,997백만원 반납
- ('20년) 10,194백만원\*, 국공립 52개소, 교육전담간호사 254명 지원('20.12.말 기준)  
\* 실집행액 9,972백만원(집행률 97.8%), 집행잔액 222백만원 반납
- ('21년) 10,194백만원\*, 국공립 50개소, 교육전담간호사 259명 지원('21.12.말 기준)  
\* 실집행액 10,106백만원(집행률 99.1%), 집행잔액 88백만원 반납
- ('22년) 10,194백만원\*, 국공립 70개소, 교육전담간호사 288명 지원('22.12.말 기준)  
\* 실집행액 9,080백만원(집행률 89.1%), 집행잔액 1,114백만원 반납
- ('23년) 7,003백만원\*, 국공립 61개소, 교육전담간호사 172명 지원('23.12.말 기준)  
\* 실집행액 6,866백만원(집행률 98.0%), 집행잔액 137백만원 반납

자료: 보건복지부

□ 2023년 5월 19일 「의료법」 개정(2024.5.20.시행)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신규 간호사등)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의무가 부여되었으며,<sup>2)</sup> 동 조항은 2024년 9월 제정된

- 1) 국공립병원 220개소 중 급성기병원 109개소를 신청대상으로 함(요양·치과·한방병원, 군병원, 치료감호소 제외)
- 2) 「의료법」 제41조의2(교육전담간호사) ①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이하 “신규간호사등”이라 한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신규간호사등의 교육과정 기획·운영·평가
    2. 신규간호사등의 교육 총괄 및 관리
    3.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관리 및 지도
    4.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개발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 대상과 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 신규간호사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법」(2025.6.21.시행)<sup>3)</sup>으로 이관되었음.

-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sup>4)</sup>상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 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라 최소 336명의 교육전담간호사가 필요함.

<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대상 및 기준('25.1월 기준) >

| 배치대상                            | 배치기준                                       | 해당<br>의료기관수           | 최소<br>필요인원 |
|---------------------------------|--------------------------------------------|-----------------------|------------|
| 300병상 이상의<br>종합병원               | 2명<br>(필요시 300병상 초과 250병상 당<br>1명 추가배치 가능) | 168개소                 | 336명       |
| 병원급 의료기관 및<br>300병상 미만의<br>종합병원 |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br>인원                      | 4,059개소 <sup>5)</sup> | -          |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해당 병원이 겪게 되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을 위한 병원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간호사를 양성하여 궁극적으로는 환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임.

3) 「간호법」 제32조(교육전담간호사) (내용은 구(舊) 「의료법」 제41조의2(교육전담간호사)와 동일함)

4)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9(교육전담간호사)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했을 것  
2. 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2년 이상 임상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 대상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명. 다만,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250병상마다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2. 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인원

5) 치과병원 236개소, 한방병원 560개소, 정신병원 260개소, 요양병원 1,388개소 포함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할 경우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의 안착을 유도하여 신규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우수한 간호인력으로 성장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법」 제41조의2의 신설 취지<sup>6)</sup>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을 통해 1년 미만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을 시범사업 실시 첫 해인 2019년 23.5%에서 2022년에 20.0%로 약 3.5%p 감소시켰다고 평가한 바 있음.<sup>7)</sup>

□ 다만, 현행법상 국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국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운용 상황과 보조금 관리 원칙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특히 개정안은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하면서도, 후단 신설을 통해 지원대상, 범위, 금액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sup>8)</sup>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는 현행법에 비하여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105069, 최연숙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中 “신규 간호사의 상당수가 과도한 업무, 대학교육과 임상현장의 격차에 따른 업무부적응, 복잡한 대인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규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적응하여 우수한 간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는 2019년부터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전체 병원에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7) (2019년) 23.5% → (1차년도, '20년) 15.8% → (2차년도, '21년) 16.3% → (3차년도, '22년) 20.0% (\* '21 ~ '22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병원 전체 신규간호사 이직률이 증가함)

8) 이러한 이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함

실제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은 「의료법」에 지원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인 2019년~2022년 시범사업의 형태로 연 102억원 수준(2019년은 76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시범사업 종료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2023년에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7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배정하였음.

**< 교육전담간호사 및 필수의료간호사 양성 지원사업 예산 >**

(단위: 백만원)

| 구분  |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        |        |        |       | 필수의료간호사<br>양성지원사업 |        |
|-----|------------------|--------|--------|--------|-------|-------------------|--------|
| 년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예산액 | 7,660            | 10,194 | 10,194 | 10,194 | 7,003 | 9,833             | 10,142 |

주: 두 사업 모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임

자료: 보건복지부

2024년 예산에서는 기존의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2025년에는 101억원으로 증액되었음.

- 정부는 필수의료간호사 양성지원사업을 통하여 2024년 83개 기관의 필수의료 분야 병동 240명(중환자실 68명, 응급실 52명, 수술실 29명 등)의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하였고, 2025년에는 응급의료센터(권역, 지역), 권역외상센터, 공공병원으로서 지역내 필수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으로 확대하여 교육전담간호사 255명을 지원할 예정임.

**< 교육전담간호사 및 필수의료간호사 지원사업 비교 >**

|                                      |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 필수의료간호사 양성 지원사업                                                                                                                                                                               |
|--------------------------------------|-------------------------------------------------------------------------------------------------------------------------------------------------------------------------|-----------------------------------------------------------------------------------------------------------------------------------------------------------------------------------------------|
| <b>목적</b>                            |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을 통한 간호사 임상역량 강화 유도                                                                                                                                           |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체계 구축                                                                                                                                                       |
| <b>근거법률</b>                          | 없음(시범사업)                                                                                                                                                                | 「의료법」 제41조의2                                                                                                                                                                                  |
| <b>대상</b>                            | 국공립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br>신규간호사 채용기관<br><small>*상급종합병원, 요양·한방·치과·군병원 및<br/>치료감호소 제외</small>                                                                                  | 종합병원 중 필수의료병동운영 및<br>필수의료수행 의료기관<br><small>*상급종합병원 제외<br/>*필수의료병동: 중환자실, 수술실,<br/>집중치료실(뇌졸중, 고위험임산부), 응급실<br/>*필수의료수행: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또는<br/>권역외상센터, 지역거점 공공병원,<br/>공공보건의료법상 취약지 소재 의료기관</small> |
| <b>지원내용</b>                          | 교육전담간호사 1인당 월<br>320만원 지원                                                                                                                                               | 교육전담간호사 1인당 월<br>320만원 지원                                                                                                                                                                     |
| <b>교육전담<br/>간호사<br/>유형별<br/>주요업무</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전담간호사: 교육과정 기획·운영 및 평가, 현장교육간호사 교육 지도 및 관리</li> <li>- 현장교육간호사: 프리셉터<sup>9)</sup> 지도 관리 및 업무지원, 신규간호사 임상교육 총괄 및 관리</li> </ul> |                                                                                                                                                                                               |

□ 또한 건강보험재정을 통한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2024년 12월 기준 총 259개 기관 1,165명의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하고 있음.

- 건강보험재정을 통한 시범사업인 ‘간호사교대제 개선지원 사업’은 참여기관의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은 월 331만원, 종합병원 및 병원은 월 378만원을 지원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9) 프리셉터십(preceptorship)이란 신규 간호사의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해 경력 간호사가 밀접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국내에서는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임상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음(문경선·박경숙, 프리셉터 교육이 프리셉터 역할인식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간호행정학회지, 2004). 그러나 간호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프리셉터는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업무를 함께 감당하면서 소위 ‘태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함(한국일보, 신입 조련 프리셉터 있는 한, 간호사 태움 끝나지 않는다, 2019.2.8.).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 사업'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의 통합병동 내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하여 월 320만원을 지원함.

<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현황(국비+건강보험재정, '24.12. 기준) >

| 구 분        | 계      |       | 국비                  |      | 건강보험재정                        |      |                        |       |
|------------|--------|-------|---------------------|------|-------------------------------|------|------------------------|-------|
|            |        |       | 필수의료<br>간호사<br>양성지원 |      | 간호사교대제<br>개선 지원사업<br>(22~'27) |      | 간호간병<br>통합서비스<br>(20~) |       |
| 계          | 1,165명 | 259개소 | 240명                | 83개소 | 632명                          | 86개소 | 293명                   | 180개소 |
| 상급<br>종합병원 | 450명   | 45개소  | -                   | -    | 393명                          | 44개소 | 57명                    | 25개소  |
| 종합병원       | 664명   | 170개소 | 240명                | 83개소 | 233명                          | 39개소 | 191명                   | 114개소 |
| 병원         | 51명    | 44개소  | -                   | -    | 6명                            | 3개소  | 45명                    | 41개소  |

\* 사업별 중복 지원기관은 1개소로 산정, 지원인원은 중복 없음

□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 이내로 하면서, 3년마다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연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방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sup>10)</sup>

- 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4. 그 밖에 존속기간의 설정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1) 보건복지부(신중검토)

- ☐ 보건복지부는 숙련된 교육전담간호사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통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지원하고 있음.
- ☐ 정부 재원 및 지원방식 등의 탄력적 운영 및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강행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2) 기획재정부(수용곤란)

- ☐ 이미 현행법에 지원근거가 있고,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sup>11)</sup>에서 강행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입법 비효율을 야기하고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3) 대한병원협회(찬성)

- ☐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 부여에 상응하는 비용 지원이 필요하므로 동 개정안에 찬성함.

---

11)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25) 101억 원

#### (4) 대한간호협회(찬성)

□ 의무적으로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기 위한 비용적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의 비용지원이 필수적이며, 보건복지부령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영되어야 함.

##### 1. 지원대상

- ① 신규간호사 채용 및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계획 수립 의료기관 우선 지원
- ② 교육전담간호사 및 해당 업무를 지원하는 간호사들에 대한 지원
- ③ 간호사 정원 기준 및 간호등급 기준등급 이상 의료기관 지원

##### 2. 지원범위

- ① 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및 인력 충원에 필요한 비용 지원
- ② 제도 운영에 필요한 물품, 시설, 장비, 교육 자료 제작 등의 비용 지원

\* 교육공간과 기자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환경에 대한 의료기관 인증평가 항목 포함 고려

##### 3. 지원금액

-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

##### 4. 기타 필요사항

- 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수준 확대
- ② 외부교육 시 공가 처리 및 의료기관 내 교육훈련부 마련

#### (5) 대한의사협회(반대)

□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업무범위, 개념, 교육주체 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개정은 시기상조이며, 특히 교육을 간호사가 당연히 담당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어 해석상 혼란이 우려됨. 국가의 간호사 직역 교육 지원은 직역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의료인력 수급 위기 속에서는 간호사가 아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도에 대한 비용 지원은 부적절하며,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 (6) 보건의료노조(찬성)

-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의무화는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교육전담 간호사를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신규간호사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임상 적응력을 높이고 업무상 독립하는 부담감을 줄여 조기 이직을 방지하는 한편, 신규간호사의 역량 향상은 간호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환자 안전에도 기여할 것임.

|               |
|---------------|
| 문 의 처         |
| 02) 6788-5494 |

|             |                            |
|-------------|----------------------------|
| <b>[참고]</b> | <b>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개요</b> |
|-------------|----------------------------|

## □ 개 요

- (목적)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체계 구축 지원
- (예산) 101억 4천 2백만 원

##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필수의료 병동\* 및 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
  - \*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뇌졸중, 고위험임산부)
  - \*\*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공공병원 등
- (지원내용) '교육전담간호사' 1인당 월 320만 원
- (지원규모) 교육전담간호사 255명 지원

## □ 사업 참여 기본 요건

- (교육 인프라) 간호교육 전담부서(팀) 설치
- (간호인력)
  - 필수의료 병동 : 현장교육간호사가 배치 예정인 병동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등급 이상
  - 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 : 의료기관(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등급 (1등급) 이상

<필수병동별 간호사 배치 기준(종합병원 기준등급, '25.1.1일 기준)>

| 중환자실<br>(간호사수 대 환자수)                                                                                                                 | 수술실                             | 집중치료실               |                        | 응급실<br>(간호사 1인당<br>내원환자수)       |
|--------------------------------------------------------------------------------------------------------------------------------------|---------------------------------|---------------------|------------------------|---------------------------------|
|                                                                                                                                      |                                 | 뇌졸중<br>(간호사수 대 병상수) | 고위험임산부<br>(간호사수 대 병상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 1:0.63 미만</li> <li>▪ (소아) 1:0.53 이상</li> <li>▪ (신생아) 1:0.63 미만<br/>(각각 3등급)</li> </ul> | 수술실당<br>간호사<br>1명~3.5명<br>(3등급) | 1:1.25 이하           | 1:1.5 이하               | 1,825:1~<br>2,190:1 미만<br>(7등급) |